

#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

1994년 1월 12일

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조제1항중 법 제11조제1항에서 “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”라 함은 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석유는”으로, “윤활유 및 윤활유기유(조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윤활유, 윤활유기유(조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아스팔트”로 한다  
제 7조의2제2항 본문중 “동력자원부령”을 “통상산업부령”으로 하고, 동항제5호중 “동력자원부장관”을 “통상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 8조제1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”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, 동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명세서

제 8조제3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, 동조제4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판매소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의 신고”를 “석유판매업의 신고”로 “사본을 첨부하여”를 “사본을 첨부(이동판매소 신고의 경우를 제외한다)하여”로 한다.

제 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7항 본문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폐승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”로 하며,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,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⑧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제1항

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석유제품(용제를 포함한다) 공급계약서 사본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계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조제2항본문중 “동력자원부장관”을 “통상산업부장관”으로 하고, 동항제1호중 “등유·아스팔트”를 “등유·나프타·아스팔트”로 하며,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다만,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계약기간 1년미만의 수입계약을 제외한다.

제 11조의2 본문중 “법 제16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1항”을 “영 제11조의3제1항”으로, “동력자원부령”을 “통상산업부령”으로 한다.

제 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1조의3(부과금 징수의 제외대상자)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제11조의2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.

제 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1조의4(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) ① 석유정제업자,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영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이 징수유예되는 경우 및 석유판매업자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서에 당해 징수제외, 징수유예 또는 납부에

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부과금 영수필통지서로 한다. 이 경우 부과금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한 때에는 석유의 통관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3조의2(본문중 “동력자원부장관”을 “통상산업부장관”으로 하고,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별표 1]의 1.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표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표의 비고란중 “제5호 내지 제13호”를 “제5호 내지 제13호, 제16호 및 제17호”로 하며, 동표의 2.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표의 제2호중 “제9호 내지 제14호”를, 제9호 내지 제14호, 제16호 및 제17호”로 하고, 동표의 3.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표의 제6호중 “제9호 내지 제13호”를 “제9호 내지 제13호, 제16호 및 제17호”로 한다.

[별표 2]의 제목 “석유제품 품질기준 (제11조의2제2항관련)”을 “석유제품 품질기준(제11조의5제2항관련)”으로 하고, 동표의 2. 자동차용 휘발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2. 자동차용 휘발유

자동차용 휘발유는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의 연료로 적당한 품질의 정제광유로서 외관상 물과 침전물을 함유하지 아니하고 다음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

항목	종류	
	1호	2호
온 탄 값	리서취법 91이상~96미만	96이상
	모 터 법 83이상~87미만	87이상
분류	10%유출온도(°C) 50%유출온도(°C) 90%유출온도(°C)	70이하 125이하 190이하
성상	종 류 점(°C) 잔류량(부 괴 %)	225이하 2,0이하
물과 침전물(부피 %)	0.01이하	
동판부식(50°C 3hr)	1이하	
증기 압(37.8°C) (kg/cm <sup>3</sup> )	0.45~0.85이하	
산화안정도(분)	480이하	
검(mg/100ml)	5.0이하	
황분(mg/100ml)	0.01이하	
색상	노란색	착색
납(g/ml)	0.013이하	
인(g/ml)	0.0013이하	

위반사항	해당법령조문	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
16.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	법 제13조 제1항제10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석유정제업의 허가취소
17. 통상산업부장관이 치침을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한 때	법 제13조 제1항제10호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석유정제업의 허가취소

2. 석유수출입업자의 보고			
가. 석유수출입업자의 전월중 석유수출입실적 보고	통상산업부장관	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	매월 15일
나. 용제수입업자의 전월중 수입실적, 판매실적 및 거래상황 보고	통상산업부장관 시·도지사	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	매월 15일

- 비고 : 1. 옥탄값은 리서취법 또는 모터법중 택일하여 시험 한다.  
 2. 추운기후에서 사용할때의 증기압의 상한은 0.98로 한다.  
 3. 검은 세척한 현존검을 말한다.  
 4. 2호의 색상은 1호와 구별할 수 있도록 착색하여야 한다.  
 5. 첨가제의 종류 및 허용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 
 6. 군용장비 및 수출용차량등 특수용도에 한하여 납 함량이 0.3g/l 까지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색상은 착색하여 1호와 2호가 구별되어야 한다.

[별표 3]의 1. 정기보고사항의 2. 석유수출입업자의 보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4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지 제7호서식] 및 [별지 제9호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[별지 제10호서식]을 삭제하며, [별지 제11호서식], [별지 제12호서식] 및 [별지 제12호의2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[별지 제13호의3서식]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, [별지 제14호서식], [별지 제20호의2서식] 및 [별지 제27호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[별지 제27호의2서식]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[별지 제28호서식]에 4. 석유판매업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석유판매업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

##### 가. 일반대리점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

구 분	계약상대업체명					
				기타	계	
전반	○ 계약체결 업체수					
기말	○ 계약후 영업 업체수					
금반기	○ 신규허가 업체수 ○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○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 (순증) - 전입업체수 - 전출업체수 ○ 폐업업체수 ○ 휴지업체수					
금반기말	○ 계약체결 업체수 ○ 계약후 영업 업체수					

금반기말	○ 계약체결 업체수 ○ 계약후 영업 업체수					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

#### 나. 주유소의 석유제품 공급현황

구 分	계약상대업체의 대표					
				기타	계	
전반	○ 계약체결 업체수					
기말	○ 계약후 영업 업체수					
금반기	○ 신규허가 업체수 ○ 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○ 계약상대 변경업체 수 (순증) - 전입업체수 - 전출업체수 ○ 폐업업체수 ○ 휴지업체수					
금반기말	○ 계약체결 업체수 ○ 계약후 영업 업체수					

※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(기타)란에 작성

제1조 본문,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본문, 제2조의2 본문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,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, 제9조제1항본문 및 제2항,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,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, 제11조의5제1항 단서 · 제2항본문 및 단서 · 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· 제4항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제1항 단서, [별표 2]의 1. 운활유의 본문 단서, 5. 용제의 다목 표 하단의 단서, [별표 3]의 1. 정기보고사항의 표증 제1호 가목 내지 다목, 제3호 가목, 제4호 가목 · 나목의 보고받는 자란, 2. 수시보고사항의 표증 제1호 가목 · 나목 및 제2호의 보고받는 자란중 “동력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통상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  
 [별지 제1호서식] · [별지 제2호서식] · [별지 제4호서식] · [별지 제5호서식] · [별지 제8호서식] · [별지 제16호서식] 및 [별지 제17호서식]의 서식중 “동력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통상산업부장관”으로 “동력자원부”를 각각 “통상산업부”로 한다.  
 [별지 제18호서식]의 수수료란을 삭제하고, 동서식중 “동

력자원부장관”을 “통상산업부장관”으로, “동력자원부”를 “통상산업부”로 한다.

[별지 제28호서식] 및 [별지 제29호서식]의 수신란중 “동력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통상산업부장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2.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과태료 부과기준(제17조관련)

위 반 행 위	관 련 법조문	석유정제업자		석유판매업자			석 유 수출입 업 자
		허 가 대 상	신 고 대 상	도매업인 판매업자	주유소 (액화석 유가스충 전사업자 포함)	소매업인 판매업자	
1.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한 때	법 제19조	3 천 만원	2 천 만원	1 천 5 백 만원	500만원	300만원	2 천 만원
2. 통상산업부장관이 명한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	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	3 천 만원	2 천 만원	1 천 5 백 만원	200만원 (주유석 유소비자 는 이에 준함)	100만원	2 천 만원
3.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가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	법 제19조 제3항, 법 제12조 제4항	1 천 만원	6 백 만원	400만원	200만원	100만원	
4.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의 수입·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	법 제10조	1 천 만원					
5.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수출입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	법 제11조 제3항						1 천 만원
6.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의 휴·폐지 및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	법 제14조	1 천 만원	600만원	400만원	200만원	100만원	600만원

에너지 절약은 우리 손으로부터